

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

1 관련근거

- 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(의회에 대한 보고)
- 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('26.3.30.)
※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¹⁾을 현행 25조원 → 27조원으로 확대(제4조)

2 개정사유

- ☐ ‘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공사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 - 개정사유 :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

3 주요내용

- ☐ 노후시설, 전동차 교체 등 市 출자계획 감안한 수권자본금 확대
 - 수권자본금 확대 규모 : 2조원 (25조원 → 27조원)

주요내역		증액	비고
합계		2조원	
①	('26년~'29년 예정) 市 출자금 - '수권자본금 잔여 한도' 차액	10,626억원	· 市 출자금(1조 4,863억원 예정) - 잔여 한도('25년말, 4,237억원) ※ 세부내역 : 붙임2
②	5·8호선 연장구간 현물출자(예정)	4,000억원	· 강일역, 암사역사공원역
③	추가 市 출자 대비	5,374억원	

붙임 1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2. 市 출자금 및 수권자본금 잔여 한도 세부내역 1부.

1) 서울시가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

현행	개정안
[제1장 제4조(자본금)]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	[제1장 제4조(자본금)]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7조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□ '26년 이후 市 출자금 세부내역 : 14,863억원 (예정)

(단위:억 원)

구 분	소 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市 출 자 금	14,863	8,096	3,006	2,158	1,603
① 전동차 교체·증차	4,036	1,108	1,435	1,021	472
② 노 후 시 설	2,851	694	713	700	744
③ 진 접 기 지	5,775	5,775	—	—	—
④ 기타(통합관제 등)	2,201	519	858	437	387

□ 수권자본금 잔여 한도 : 4,237억원 ('25.12.31. 기준)

수권자본금(A)	납입자본금(B)	잔여한도(A-B)
250,000억원	245,763억원	4,237억원